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7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7,922	32,118	31,143	36,068	36,068	4,925	15.8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001-1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8,531	9,640	9,296	9,656	9,656	360	3.9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7001-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9,020	10,892	10,521	11,806	11,806	1,285	12.2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70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169	2,509	2,509	2,508	2,508	△1	△0.04

**4.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 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999	1,090	1,090	1,128	1,128	38	3.5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1-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609	595	595	663	663	68	11.4

**4. 사업목적**

- 행정실무원 보수, 운영수당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7)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4,586	5,250	5,149	5,348	5,348	199	3.9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70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1,130	1,214	1,214	1,225	1,225	11	0.9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041	1,089	1,052	1,182	1,182	130	12.3

###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7031-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업무평가 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182	193	193	188	188	△5	△2.6%

### 4. 사업목적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17.7.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기	주요내용
정기점검	매월	▪ 부처별 자체점검 실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 (각 부처)
	분기	▪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등 점검
	반기	▪ 주요 추진실적·성과 종합점검
	매년	▪ 연간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국정과제 평가
수시점검		▪ 현장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집중 점검

사 업 명
(11)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7031-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국정과제관리관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정운영 정보화	935	965	965	965	965	-	0.0%

###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매주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국정운영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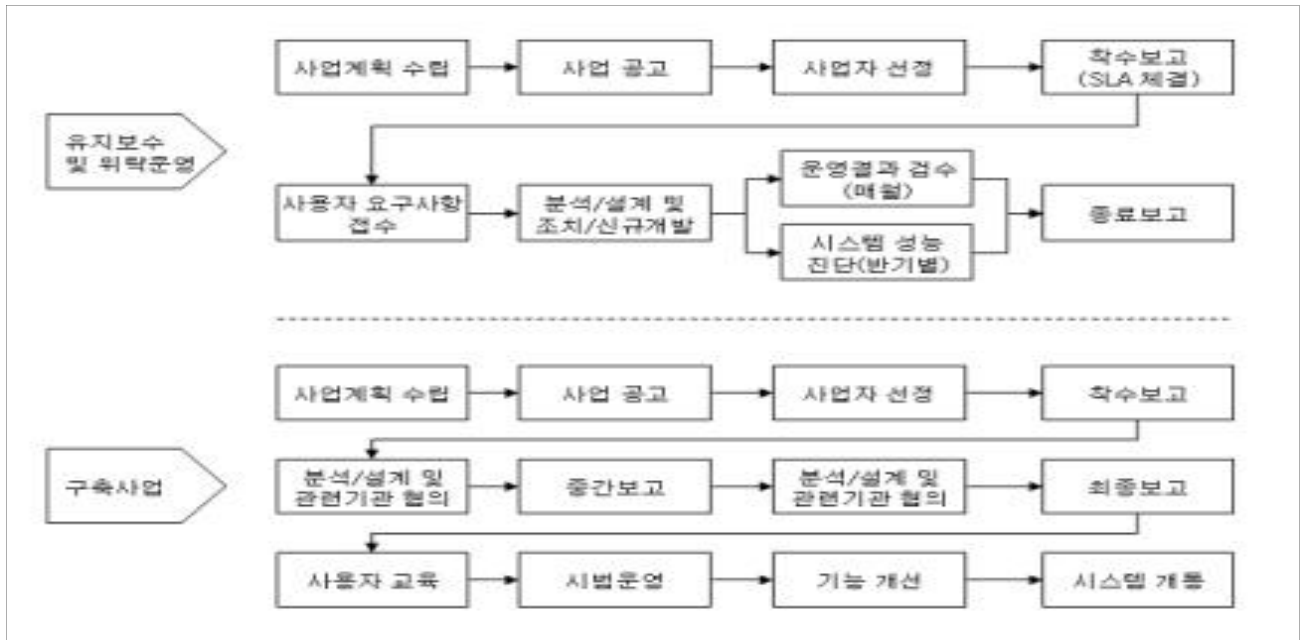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78호, 2018.1.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100개 관리,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 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031-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3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163	2,153	2,153	3,653	3,353	1,200	55.7

### 4. 사업목적

- (정평위 운영)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각종 개별평가에 대한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상호 유기적 관리 체계 마련 및 정부업무평가 전문성 제고
- (평가포상금)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
    -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추진
    -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 (‘12)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13)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기관평가 3개 부문
-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 **국정과제·일자리창출·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 **일자리 창출과 국정과제 부문 통합, 정부혁신 신설** 등 **특정평가체계 개편**(‘18.4월)

##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시(2004.12.24)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시행중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시달 →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 정부업무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 업 명
(13)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7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0	010	012
명칭			국정과제관리관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643	710	710	809	809	99	13.9%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를 온라인 실시간 지원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정부업무평가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사업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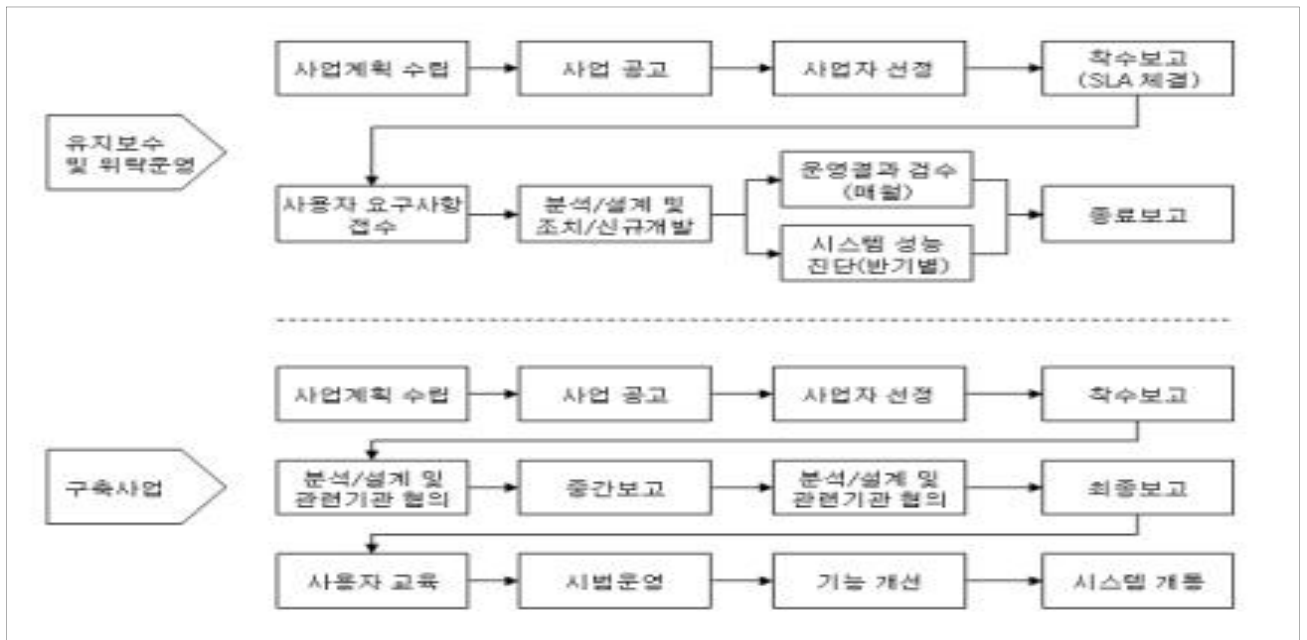
### ○ 추진경위

- '03년 '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년 e-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6년 e-IPSES 2차 정보화사업
- '07년 e-IPSES 3차 정보화사업
- '08년 e-IPSES 4차 정보화사업
- '09년 e-IPSES 5차 정보화사업
- '10년 e-IPSES 2단계 정보화사업
- '11년 e-IPSES 2단계 고도화사업
- '12년 e-IPSES 2단계 2차 고도화사업
- '13년 e-IPSES 2단계 3차 고도화사업
- '14년 국정과제기반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 '15년 '15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16년 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등 '16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
- '17년 액티브X 제거 및 정평위 홈페이지 개편
- '18년 제도변경 사항 시스템 반영 및 기능·편의성 개선
- '18년 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 '19년 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개발(1차년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특정평가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 성과목표 약 6백여개, 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 실적 6만여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실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4) 공공기관 갈등관리 (703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공공기관 갈등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공공기관 갈등관리	286	507	507	455	455	△ 52	△ 10.3%

### 4. 사업목적

- 상시적·선제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
- 주요 공공정책 및 국책사업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1항)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속위에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지시('03.9)
- 대통령,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지시('06.9)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07.2.12, 시행 5.13)
-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연장(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4.3.24~'21.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신규 지정(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20.1~'22.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0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7. 사업 집행절차

- 갈등관리 교육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민간경상보조)
  - ▲ 갈등관리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국조실) → ▲ 사업계획서 제출(수행기관) → ▲ 사업계획 승인(국조실) → ▲ 사업추진(수행기관) →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 중간점검(국조실) → ▲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수행기관) →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정산(국조실) → ▲ 차년도 사업에 사업성과 반영(국조실)

사 업 명
(15)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 (7032-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010	012
명칭					일반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운영	-	-	- (예비비 7,778)	13,734	13,734	13,734	신규

### 4. 사업목적

-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통해 포항지진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② 추진경위

-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두차례('17.11, '18.2)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



진피해구제법', '20.4.1 시행)에 따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및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20.4~5월)

- 동 위원회 및 지원단의 운영, 진상조사, 피해구제 손해사정,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연구용역,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주민설명회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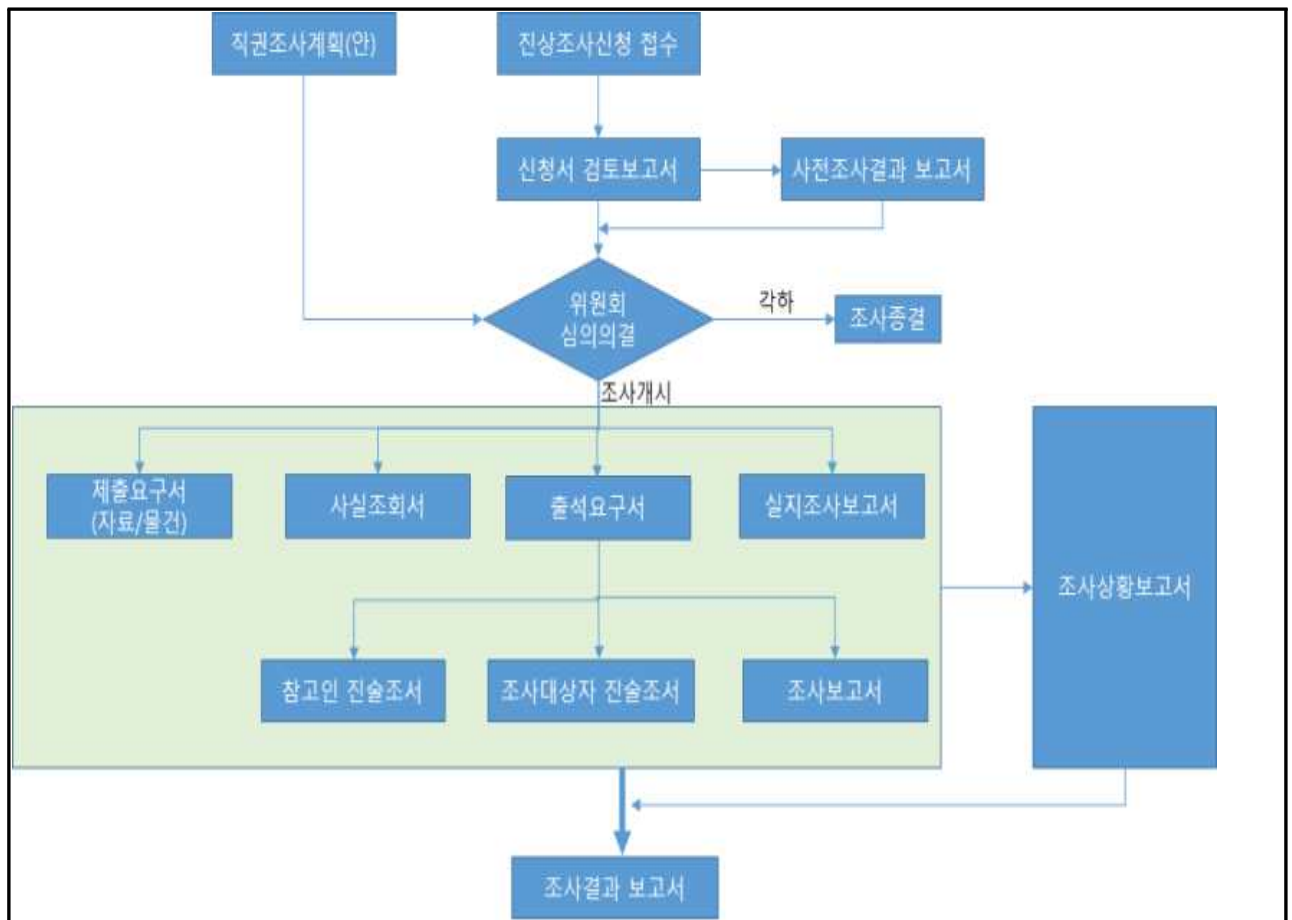
■ 포항지열발전 및 포항지진 후속조치 경과

- (사업경과) 산업부,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공고('10.10) → (주)넥스지오 수행기관 선정('10.12) → 포항 부지선정('11.4) → 시추공사 및 수리자극('12.9~'17.9) → 규모 5.4 지진발생('17.11.15) → 사업중지('17.11.24)
- (후속조치)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17.11.20)
  - 정부조사연구단('18.3~'19.2, 대한지질학회주관,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촉발\*” 발표('19.3)
    - \* 촉발(triggered) 지진 : 외부자극이 최초원인이지만 지질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외부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로 발생하는 지진
  - 여야합의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정(국회발의, '19.12.31공포, '20.4.1 시행)
    - \*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14)
  - 감사원, “무리한 과제선정, 관리부실” 발표('20.4)
- (위원회 구성 등) 진상조사위 및 지원단('20.4.1), 심의위('20.5.29) 구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포항지진 피해자 및 포항시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6) 대테러센터 운영 (7032-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3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대테러센터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대테러센터 운영	872	918	875	853	853	△22	△2.5

### 4. 사업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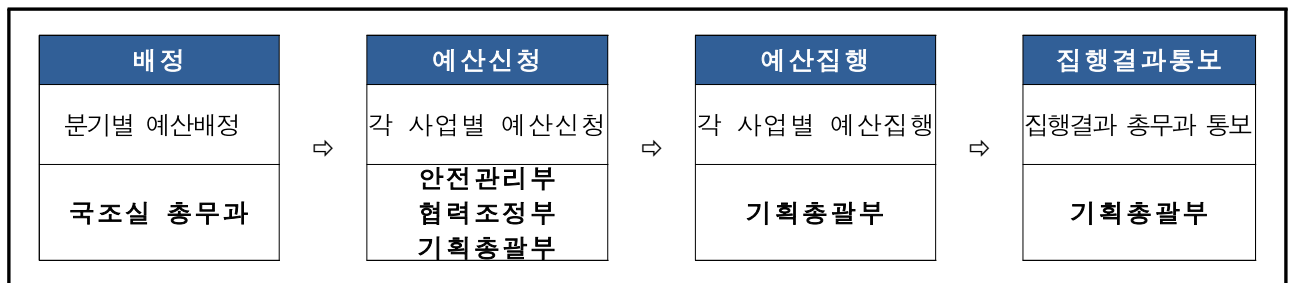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7) 인권보호관 지원사업 (7033-30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인권보호관 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인권보호관 지원	310	325	325	319	319	△6	△1.8

### 4. 사업목적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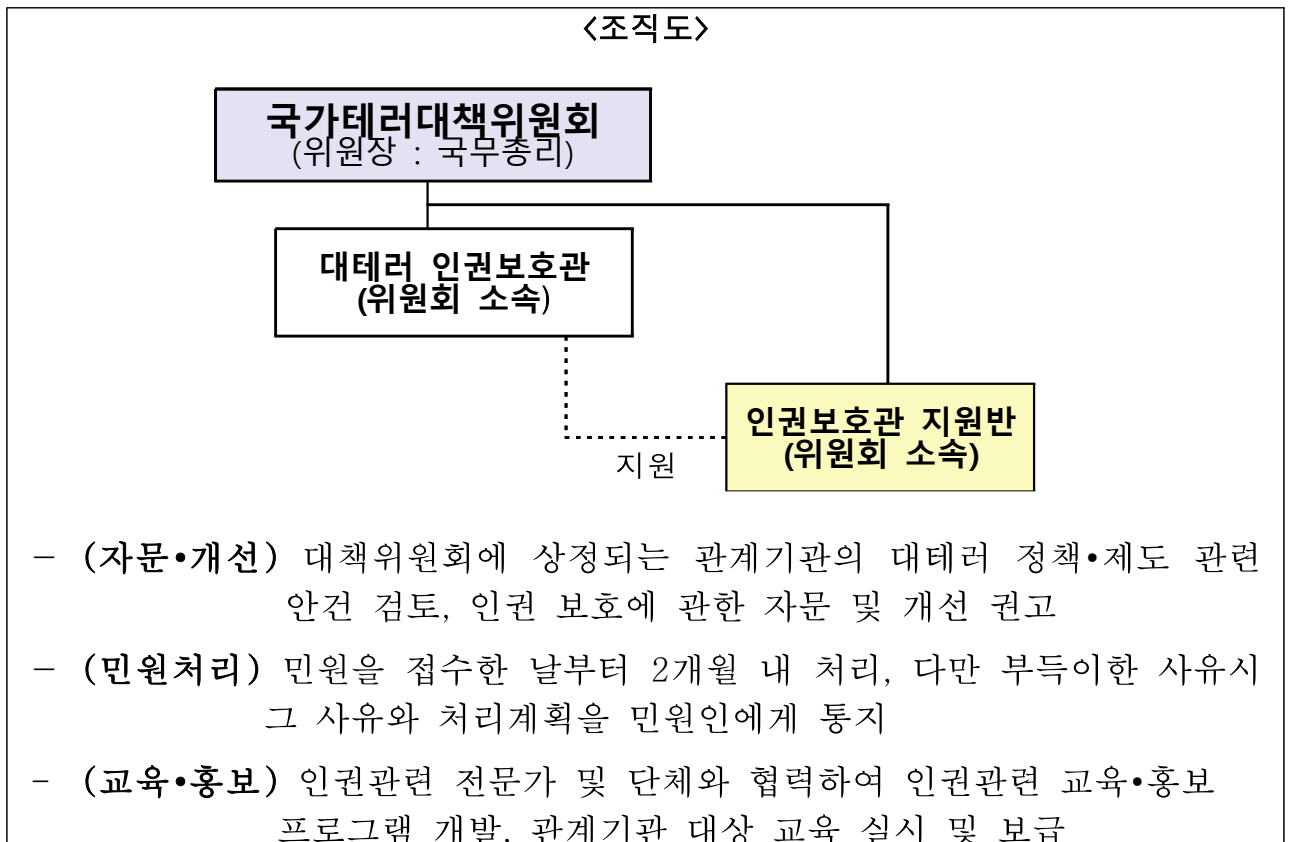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8)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7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운영	990	832	832	718	718	△114	△13.7

**4. 사업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정책 조정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② 추진경위

-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관리를 위해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촉구('17.12~'18.5월, 국회 미세먼지특위)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및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 발표
- 미세먼지특별법('18.8.14 공포, '19.2.15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조직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19.2.15) 출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2.15~'24.2.14 (5년 한시)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7. 사업 집행절차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 발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 협의·조정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보고·심의 → 대책별 과제 추진 및 이행점검



사 업 명
(1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033-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79	1,096	1,027	1,035	1,035	8.0	0.8

### 4. 사업목적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추가·신설 억제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24회, 분과위원회 5회 등 개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융자, 출연·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심사요청) 각 부처
- (예비심사)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요규제인지 여부 결정(법 제11조)
- (본심사) 중요규제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 완료(법 제12조)
- \* 비중요규제는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제11조)

사 업 명
(20)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7033-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규제개혁 정보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규제개혁 정보화	590	1,256	1,256	604	604	△ 652	△ 51.9

###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의 규제혁신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심사, 규제등록, 규제건의, 과제관리 등 규제혁신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규제혁신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알수있도록 제공하고,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처리 하는 쌍방향 소통 및 국민 참여형 규제정보포털의 안정적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 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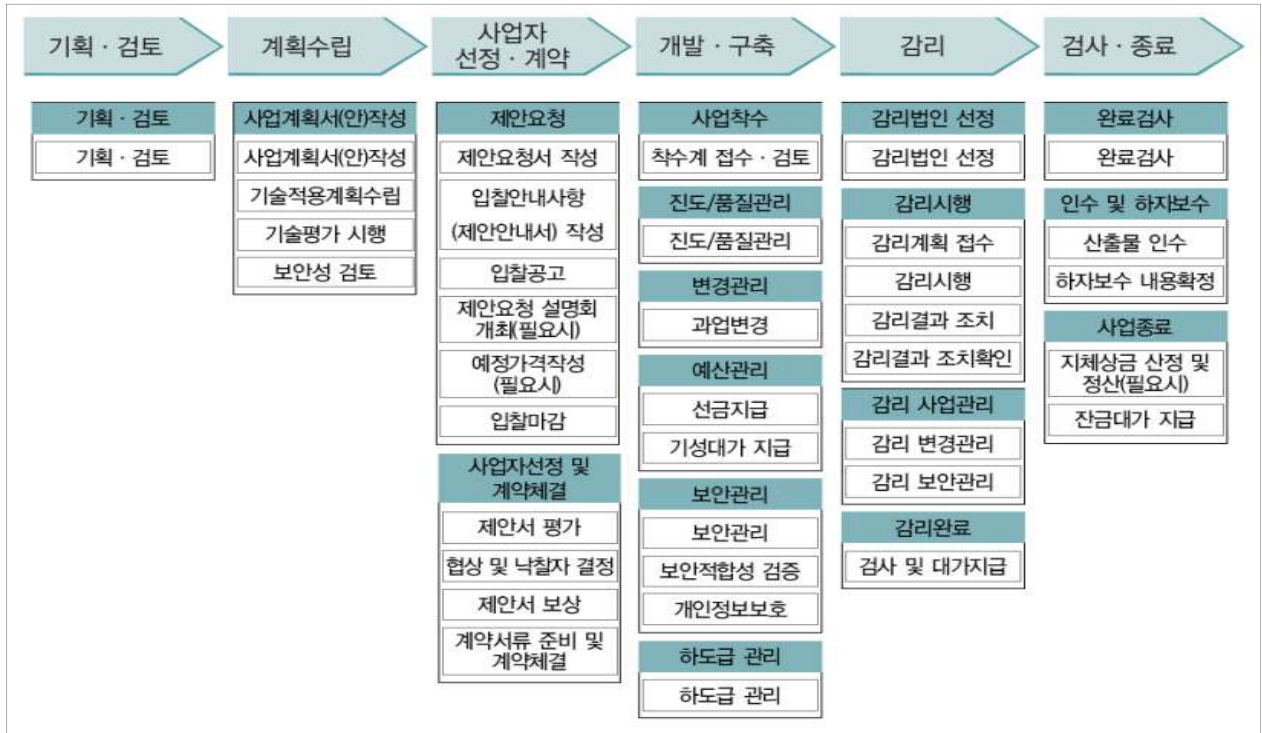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08.4.4)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08.7~'08.11)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09.3~'09.8)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10.4~'10.10)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11.3~'11.9)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12.6~'12.12)
  -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14.12~'15.4)
  -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16.7~'16.10)
  -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18.4~'18.10)
  - 규제정보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 G-클라우드 전환('20.4~'20.1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규제정보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 업무 수행 기관, 기업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1)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7033-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0	010	012
명칭			규제개선추진단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329	341	341	313	313	△28	△8.2

###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15호)

#### ② 추진경위

-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13.2)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

- 대한상의에서 추진단 설치건의를 계기로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부회장), 국조실(규제조정실장) 공동단장 체제로 규제개선 추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15호, '13.8.16 제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13.9.1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기업건의·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건의 과제를 접수 및 발굴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부처 의견 조회
- 부처 답변 이후 수용과제는 현장건의 규제혁신 과제로 관리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자에게 결과통지

사 업 명
(22) 현안과제 추진 지원 (7035-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등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현안과제 추진 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현안과제 추진 지원	1,374	1,501	1,415	1,364	1,364	△51	△3.6

#### < 내역사업 : 1.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 1)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09~계속
  - (추진내용)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녹색성장지원단의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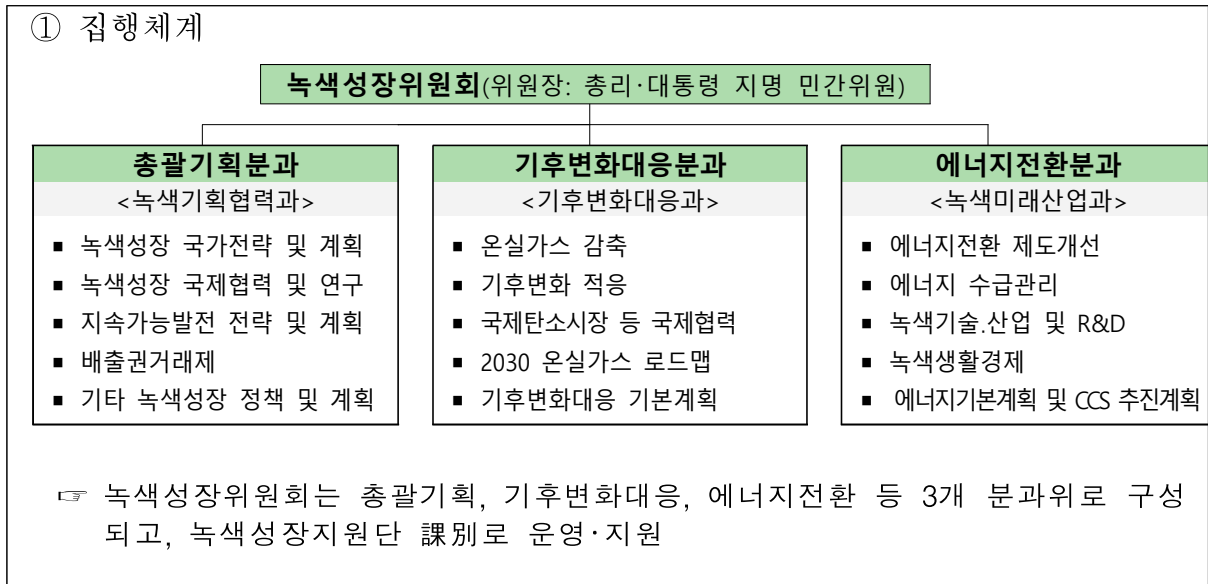
- (추진경위)

- '09. 1. 5 :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 시행  
\*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 설치
- '10. 1.1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 2010.4.14)  
\*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 '10. 4.1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시행 2010.4.14)
- '13. 3.23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녹색성장위원회 소속 변경 : 대통령→국무총리)
- '13. 8. 8 :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 시행
- '09. 2~'20. 5 : 제1기~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20. 7. 7 : 제10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중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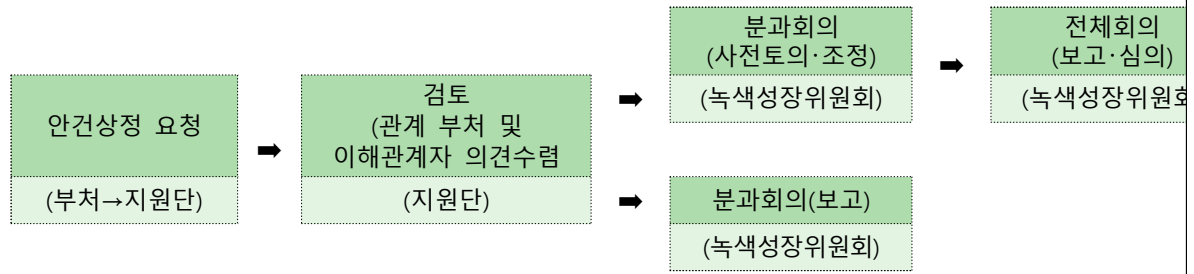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정책연구 등을 위한 운영 경비, 사업비 등 5억여원 규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4) 사업 집행절차



② 집행절차

(안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부처 및 지자체의 녹색성장 관련된 정책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내역사업 : 2.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 >

1) 사업목적

-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갈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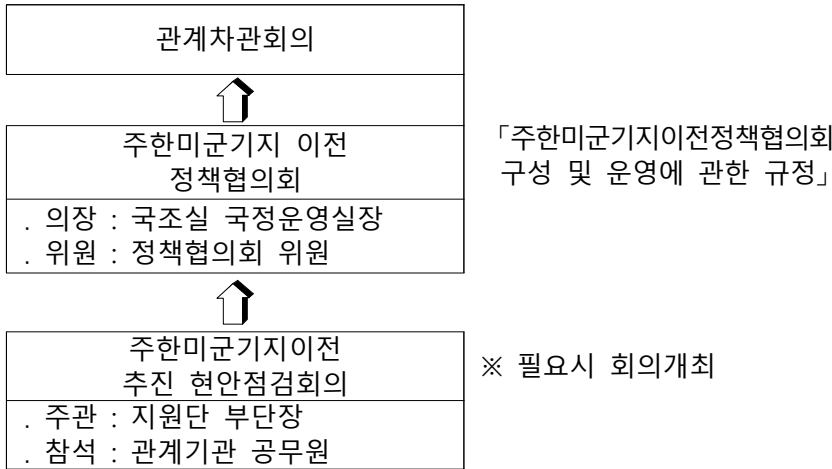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08.9)
- ② 추진경위
  - 청와대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 기지이전T/F를 설치·운영키로 결정('08.4)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제정 및 지원단 설치('08.9)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2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4) 사업 집행절차



### < 내역사업 : 3.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

#### 1) 사업목적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추모위원회 운영 지원

####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법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37조(지원·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①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구성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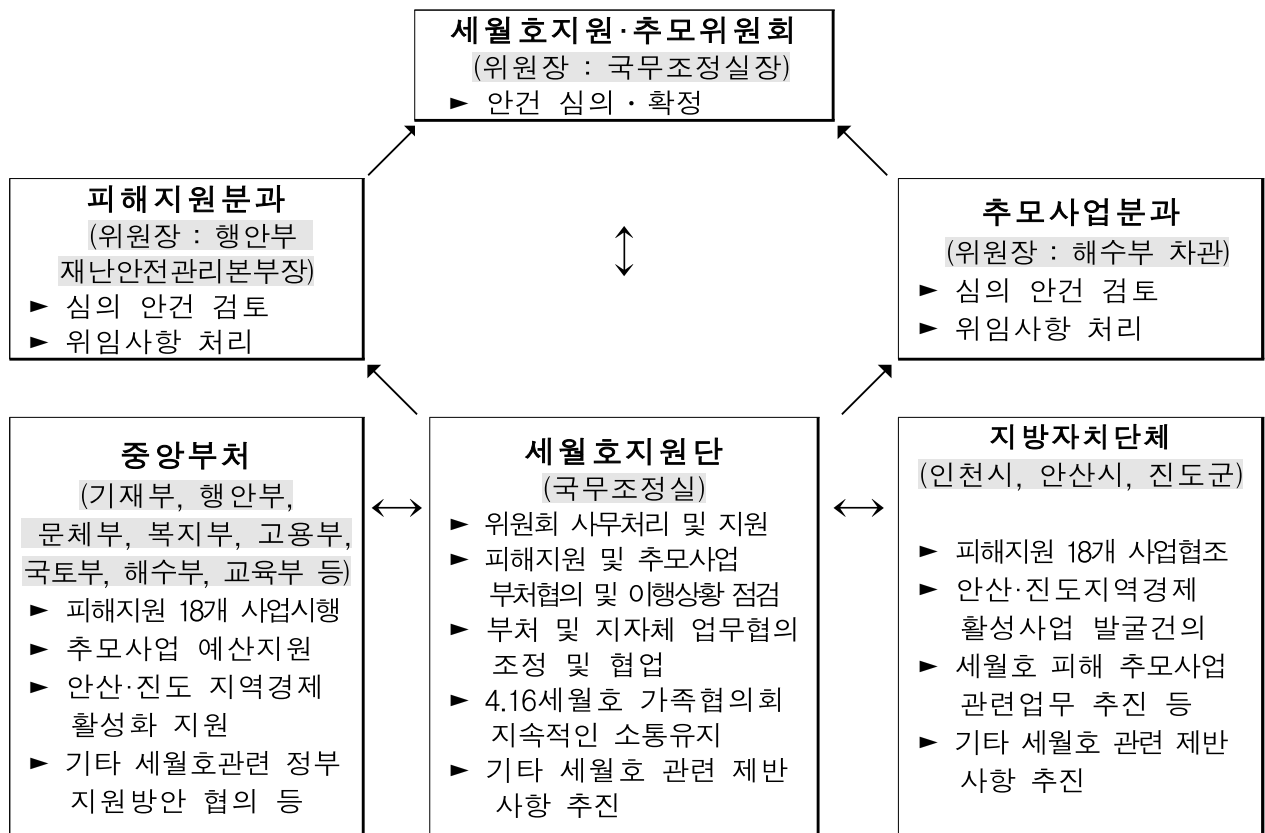
- '15.1.2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정('15.3.29 시행)
- '15. 3, 국무총리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및 지원조직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발족

- ~현재, 18개 피해지원 대책\*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지원 중
- \* 세월호피해지원법상 18개 대책 중 생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등 8개 대책 완료, 피해지역(안산,진도) 경제활성화, 안산 트라우마센터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중장기 지원대책 추진 중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수혜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피해지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 사업 집행절차



## < 내역사업 : 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 1) 사업목적

-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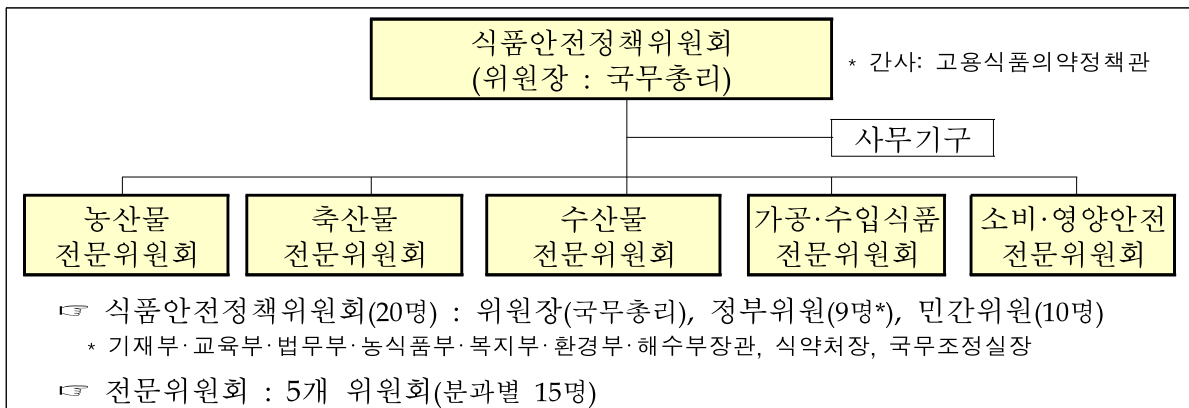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

##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08.12.1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 '08.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08.12.14)
  - '08.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09.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 '09.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09~'11년)수립
  - '11.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14년) 수립
  - '14.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년) 수립
  - '17.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수립
  - '18. 5월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8~'20년) 수립
  - '09~'20년 연도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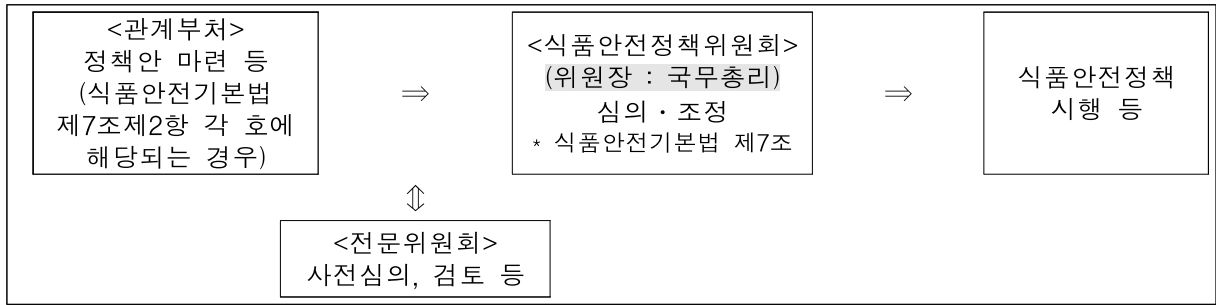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4) 사업 집행절차



## < 내역사업 :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 1) 사업목적

-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 추진 지원
  -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기단지 등

###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② 추진경위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 발표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 ‘07. 8월 :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  
(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5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부가세 환급, 투자개방형병원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 국회 제출(제4단계 제도개선 2,152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0.11월 :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실시('10.5~11월, 법제연구원), 헬스케어타운 용지보상('10.10)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완료('10.11)
- '11. 4월 : 제주특별법 개정,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5월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11.5~12)
- '11.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11.12월 : 헬스케어타운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투자유치 진행
- '12. 3월 :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준공
- '12.10월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중국 녹지그룹 본계약 (약 1조원)체결 및 착공
- '12.10월 : 사립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정상 개교
- '13. 3월 :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공사 착공
- '13. 7월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기간 연장결정('2015→'2021 / 6년 연장)
- '13. 9월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계약(A·R·H지구 약 1조1천억원)체결
- '13.1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조정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2월 :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착공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제5단계 제도개선 698건)
- '16.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22~6.1일)
- '16.12월 :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3.8~6.6일)
- '17. 8월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총리 주재) : 6단계 제도개선과제 42건 수용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17.12월 :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2.28)
- '18.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14.~5.26일)
- '18. 2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계획 수립
- '18. 7월 :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7.5-6)
- '18. 11월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의견수렴·토론 워크숍

- '19. 2월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검토
- '19.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3.4~6.12일)
- '19. 6월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 착수
- '19. 12월 : 제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 '20.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실시(2.6~6.16일)
- '20.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수립(제주지원위 심의)
- '20. 7월 : 7단계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조정(7~10월)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 < 내역사업 : 6. 국민생명 지키기추진단 운영 >

### 1) 사업목적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 지키기추진단' 운영
  - \*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 목표로 추진

###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3호, '19.1.10 일부개정)

-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18.1.10, 신년사)에 따라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 ('18.1.23, 국무회의)

\*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음('18.1.10, 신년사)



\*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가 관장  
하기로 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 화재 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주시기 바람  
(18.1.29, 수석보좌관회의)

###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자살예방)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연령·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교통안전)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책임성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산업안전) △발주자 책임 부여 및 원청 역할 확대 △고위험분야 집중관  
리 △현장 관리·감독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등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신설(18.5.2)

※ 2개 팀(총괄기획팀, 교통·산업안전팀) 14인(단장 포함)으로 구성·운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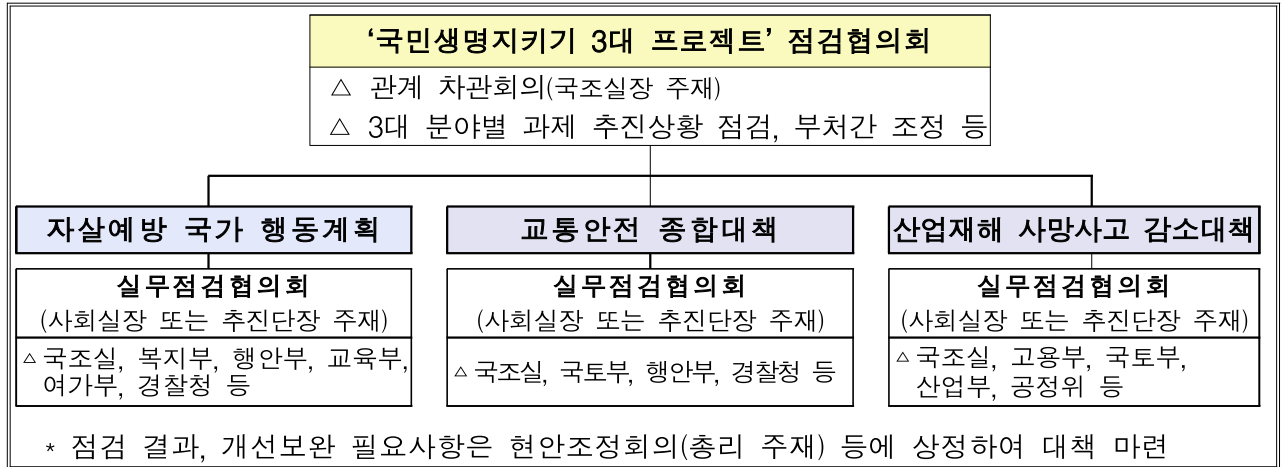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4) 사업 집행절차

- 대책별 과제 추진(소관 부처) → 이행상황 자체점검(소관 부처) →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국조실) → 점검협의회 및 실무점검협의회에서 점검·보완 →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소관 부처) →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  
및 연말 종합점검에 반영(국조실)

###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범정부 추진체계



사 업 명
(23) 세종시지원단 운영 (7035-30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종시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세종시지원단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세종시지원단 운영	330	339	339	317	317	△22	△6.5

### 4. 사업목적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심의·의결 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중심도시 기반 강화, 이전기관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유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정 '10.12.27)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1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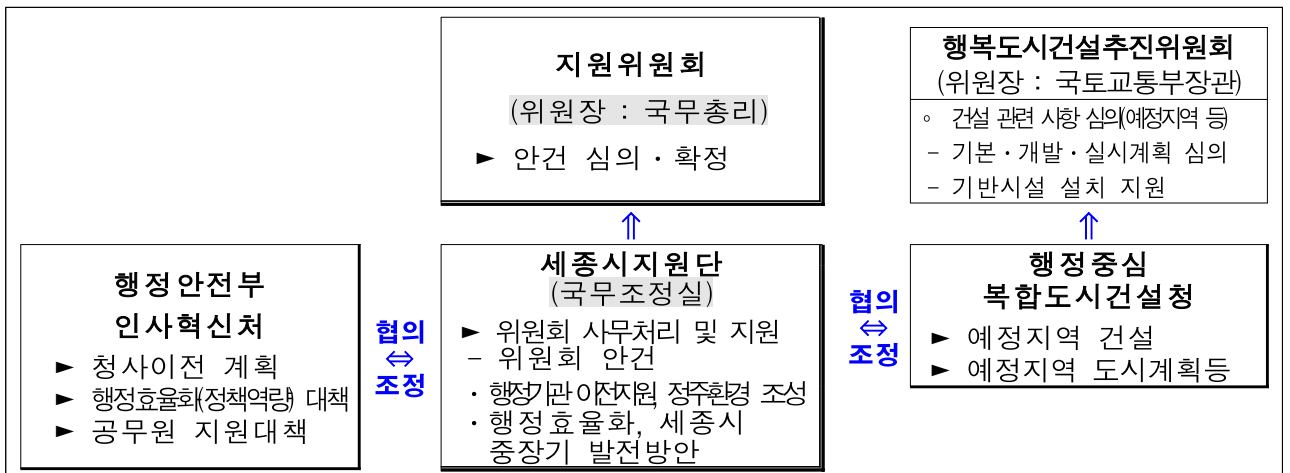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10.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0.12.27)
  -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11.1.28)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11.3.31)
  - \* 지원위원회 20회 개최(총리주재 14회, 서면 6회)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2~'14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3~'14년)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15~'16년 상반기)
- 국정과제('17.8) : 77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78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행안부('19.1~2월)· 과기정통부('19.7~8월) 등 세종시 추가 이전
  -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7035-306)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6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운영	1,123	1,347	1,347	2,153	2,153	806	59.8%

### 4.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ODA 추진체계 공고화
  - 체계적·실효적인 ODA 전략·정책 마련,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유·무상 사업 연계 및 평가·홍보 등을 통해 유·무상 ODA 통합·조정 강화 및 원조 효과성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20.11.27 개정안 시행)
  - ODA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구성(법 §7①·⑤)
  - 위원회 업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기구 설치(법 §9①)
  -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법 §16)하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13)

-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시행하고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운영(법 §18)
-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20)
- ODA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 운영(법 §2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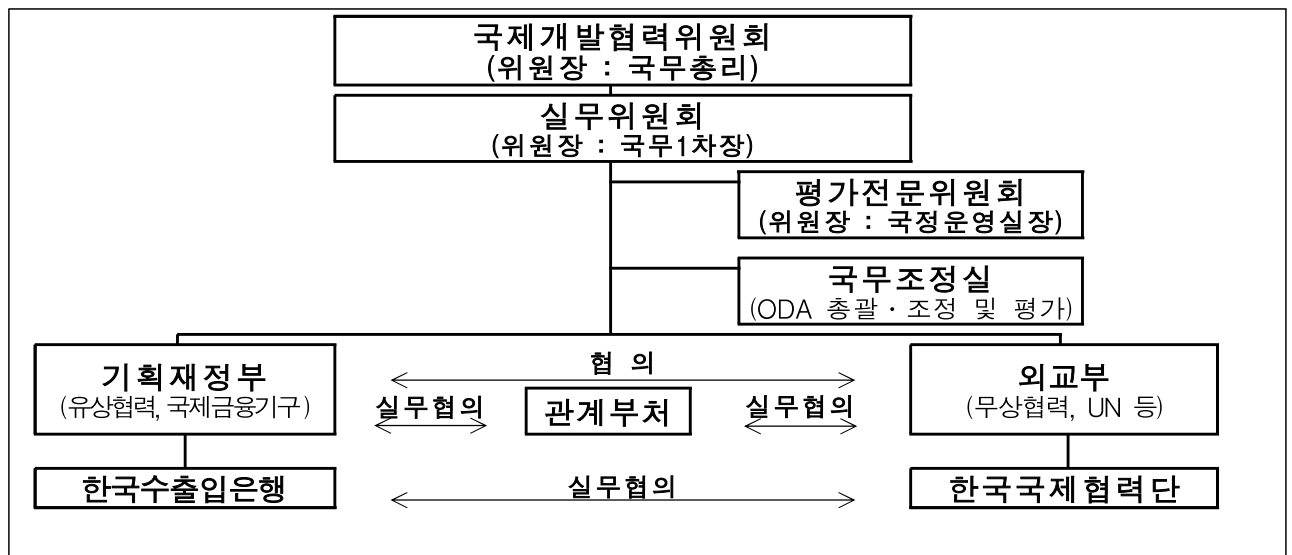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1298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 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 평가소위원회(現평가전문위원회, '20.11~)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09.10)
- ODA 추진체제 개선방안 확정('09.12.1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10.7.26)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20.11.27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수원국, ODA 관계부처, 민간단체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5)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7035-31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4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본예산(B)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운영	198	192	192	173	173	△19	△9.9%

### 4. 사업목적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5.8.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16.2.12. 개정),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62호, 16.2.11. 제정)

\* 제33조의2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추진경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6.2.12. 시행)에 따라 새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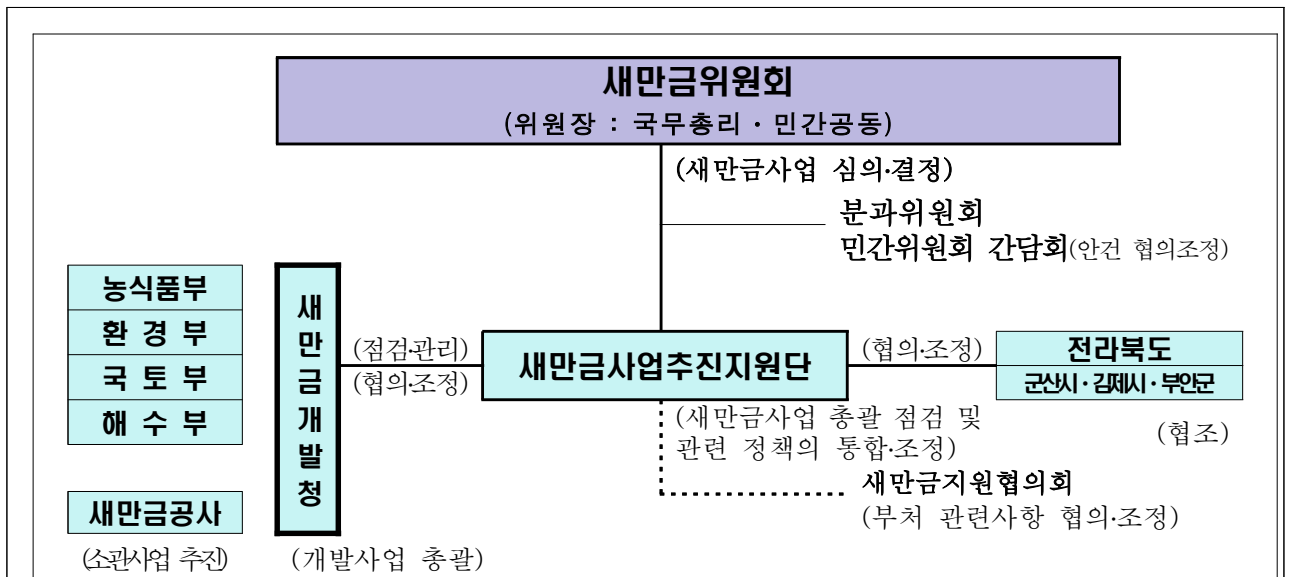
사업추진지원단 발족(국무조정실, '16.2.12.)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포함('17.7.19.)
  -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국정과제 4-3-78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 분과위원회(2개 분과) : 용도별 사업 시행, 수질·환경대책 등 전문적인 검토
  - 민간위원간담회 : 매월 새만금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논의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 안건 발굴, 상정 및 후속조치 등)
  - 여러 부처 새만금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 협의·조정
  - 농업·비농업부문, 개발·환경 관리 등 주요 정책 조정
  -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 새만금사업 관련 갈등의 관리(기업↔주민↔지자체)
  -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사 업 명
(26)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7035-31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5
명칭	국무총리실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추진과제지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3,453 (3,395)	3,289	3,289	3,359	3,159	△130	△4.0

### 4. 사업목적

- 한·OECD간 MOU(조약 제1903호)에 따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
-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분야에서 OECD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아·태 지역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교육 전수함으로써,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법·제도 선진화를 유도(ODA)
- OECD 회원국으로서 비OECD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
- 또한, 국익증진을 위한 외교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국정과제 99)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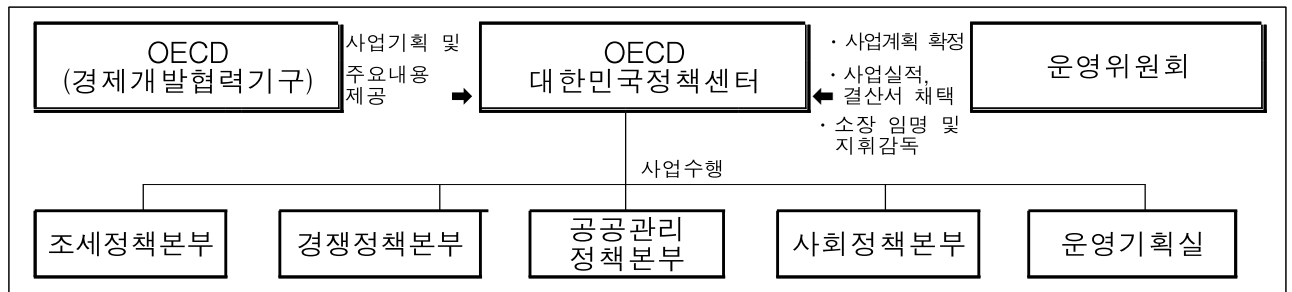
-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 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 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년 9월),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4년 4월),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년 7월),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년 9월)
- 운영 효율화를 위한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2007년 2월)
  -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 제1903호, 2008.7.18)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명칭 변경
  -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등 4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지원 (국제부담금)	100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7)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7035-316)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 (예비비 864)	2,584	2,528	3,083	3,065	537	21.2

### 4. 사업목적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청년과의 소통 업무 수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청년정책추진단)

제24조(청년정책추진단) 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2차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청년들의 높은 실업, 힘든 주거여건, 부채 증가 등 심각한 청년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년기본법(안)\*\*」 발의('18.5.21)

\* 여·야 의원 18인 참여, 위원장 이명수(한) 및 간사 김병관(민)·신보라(한)·채이배(바)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 설치 등

- 국조실을 청년정책 주관부처로 하는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정('19.5.2)

\* (靑) 청년소통정책관 (政)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 및 사무국(국조실)

- 청년기본법 제정前 범정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국조실內 추진단 설치 추진 → 청년정책 TF 설치('19.6.3)

- 국조실 직제 개정 공포 및 청년정책추진단 출범('19.7.30)

-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 공포('20.2.4) → 시행('20.8.5)

\* 법 시행에 따라,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총리소속)의 사무국 역할 수행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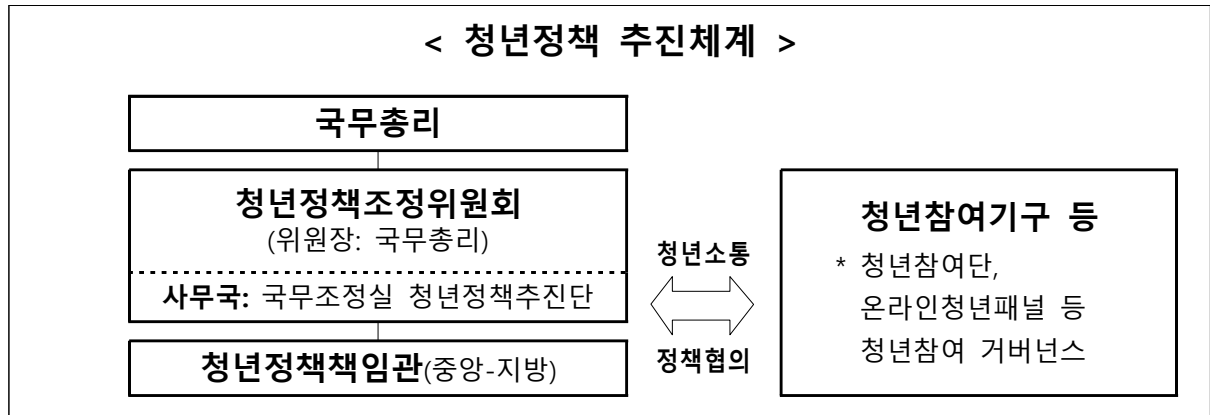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8) 생활SOC추진단 운영 (7035-318)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생활SOC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18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생활SOC추진단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생활SOC추진단 운영	1,223	1,178	1,178	1,156	1,156	△22	△1.9

### 4. 사업목적

- (목적) 부처별로 분절된 생활SOC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 운영
- (내용) 생활SOC 3개년계획(안)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과제 발굴, 생활SOC협의회·전문가 자문단 운영, 해외 우수사례 연구 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1.16)

#### ② 추진경위

- VIP,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지시('18.8.6, 수보회의)
  -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 사람중심 투자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
- '19 정부예산에 생활SOC 투자 확대편성('18년 5.8→ '19년 8.6조원)
  - \* 관계부처 합동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8.27) 발표
- VIP,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지시(9.4, 구산동 현장방문)
  - \*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필요”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총리훈령, 11.16)
  - ⇒ 국무조정실 내 '생활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 설치·운영 中
- 생활SOC 관련 국정과제 실천과제 신설(78-⑤)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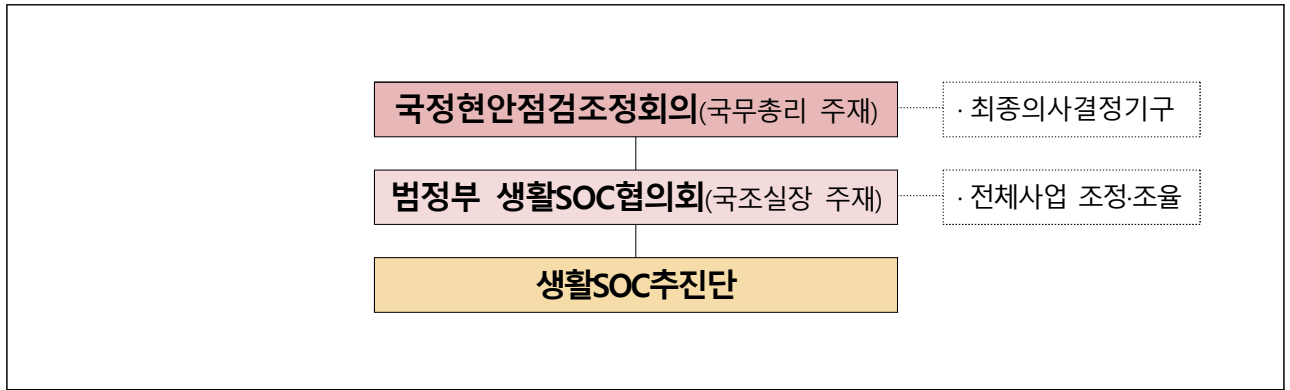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생활SOC 추진체계>

- ◇ (정책협의회)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SOC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 :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부처 차관, 3개청 차장)
  - 기능 : 생활SOC 관련 정책, 재원확보대책, 제도개선 등 협의·조정  
(\* 생활SOC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자문단 운영)
- ◇ (생활SOC추진단)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범정부적 추진 위해 설치
  - \* 국무조정실장(단장), 국장급 부단장, 각 부처·지자체공무원, 전문가 파견 등으로 총 20명 구성
  - (역할) 생활SOC 중장기계획 수립·이행점검, 생활SOC 협의회 운영, 부처별 생활SOC 사업 조정·지원, 지역 내 협력체제 및 소통채널 구축 등





사 업 명
(29)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7036-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1
명칭	국무조정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24	231	231	226	226	△5	△2.2

### 4. 사업목적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조직 구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 업무역량 강화
-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공직관 확립과 조직의 융합·일체감 형성에 기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다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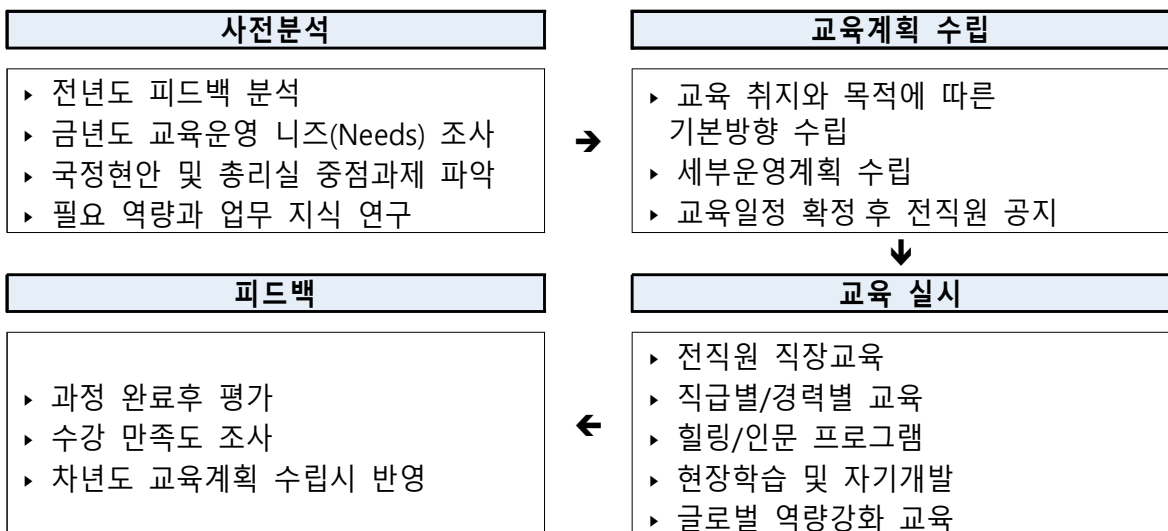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4.9월                   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
- '05년                    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
- '06년·'07년 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
- '08년                    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09~'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실용적 업무 발굴·개선
- '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0) 내부 정보화 (7036-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내부 정보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내부정보화	1,406	1,650	1,650	1,501	1,501	△149	△9.0%

### 4. 사업목적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에게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위탁운영)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기반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법률 제14914호, '17.10.24.)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 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대통령령 제29305호, '18.11.27.)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대통령훈령 제316호, '13.9.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추진경위

- (구)국무조정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06.8)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7.1)
-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국조실과 비서실 통합('08.2)
- 통합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09.2)
- 웹하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10.6)
-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10.12)
- 인트라넷 기능개선 사업('11.10)
- 정보시스템 세종시이전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12.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13.12)
- 정보시스템 자원통합계획 수립('14.12)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구축 사업('15.12)
- 내부업무포털(통합 프라임넷) 고도화 사업('16.1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17.4)
- 내부정보시스템(프라임넷) 기능 개선 사업('20.7~)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1) 공직복무 관리 (7036-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관리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3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공직복무 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공직복무 관리	644	662	662	663	663	1	0.15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 수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534호) 제11조 (공직복무관리관)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공직복무관리 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생략>

## ② 추진경위

-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 중 공직복무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

### ※ 국무조정실의 공직기강 확립기능의 연혁

- '73.01 행정조정실(제4행정조정관실) 설치, 서정쇄신 추진
  - '81.11 4행정조정실 서정쇄신기능 이관→ 사회정화위원회
  - '89.01 사회정화위 폐지→ 총리실(제4행정조정관실) 이관
  - '94.12 2국(사정총괄심의관, 예방심의관) 체제로 변경
  - '98.02 1국(조사심의관) 체제로 변경
  - '08.02 이명박 정부, 조직 폐지
  - '08.7.21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 '10.7.26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변경(총리실 직제 개정)
- ⇒ 정부 공직기강업무 총괄기관으로 **40년 이상**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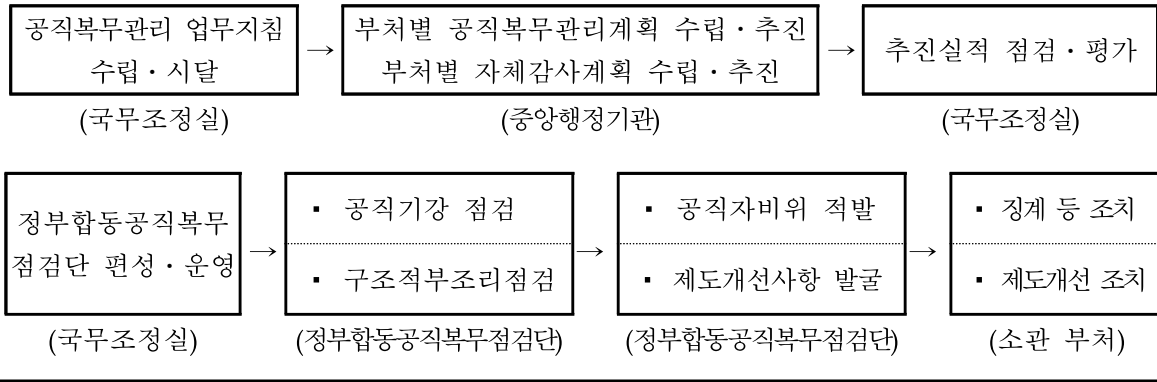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추진 체계도



사 업 명
(31) 국무총리 공관관리 (7036-30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5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공관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총리 공관관리	373	400	400	400	400	-	-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 공관(세종, 서울)의 주요 건축물(주거동, 업무동, 삼청당 등)과 부대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1 ~ 계속
- 사업규모 : 공관시설물 유지·보수(308백만원), 공관 집기류 교체·신규 구매(80백만원), 관리용역비(1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무조정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 ⇒ 공고 ⇒ 계약 ⇒ 계약이행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사 업 명
(33)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 (7036-306)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무기획관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799	1,801	1,709	1,801	1,801	92	5.4

### 4. 사업목적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헌법 제86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8조①항)

② 추진경위

-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각 통할 등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조정 및 현안대책 관련 회의, 민생 현장방문, 민의수렴 및 국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내·외빈 기념품·선물비, 행사비 등 집행소요 발생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

사 업 명
(34) 조세심판 정보화 (7036-307)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7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조세심판 정보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조세심판 정보화	475	265	265	283	283	18	6.8

### 4. 사업목적

- 조세심판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통하여 내부 사용자 및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심판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사건처리기간 단축 및 대민서비스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② 추진경위
  - '01. 1월 ~ '01. 8월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 '01. 1월 ~ '01. 6월 : 내부업무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08. 5월 ~ '08. 7월 : 조직개편에따른 시스템 개선 추진

- '11. 4월 ~ '11. 10월 : 조세심판결정례 DB구축 및 검색강화 사업
- '12. 2월 ~ '12. 6월 : 내부업무관리시스템 WEB방식으로 전환 사업
- '12. 1월 ~ 현재 : 환경변화에 따른 납세자 정보수요 반영을 위하여 관리용역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35)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7036-31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1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	733	733	813	813	80	10.9
	(예비비 674)						

### 4. 사업목적

-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패사각지대\* 시정·예방
  - \* 소관부처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여러 부처의 소관이어서 단일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 부처합동 점검체계(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를 통해, 부패·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처벌·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舊부패예방감시단, 舊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55호)

### ② 추진경위

- ('14.8) 세월호 사건('14.4)을 계기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점검체계를 갖춘 한시조직으로 출범
  -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총리훈령/'14.8.13)
- ('15.7, '16.12, '17.8, '19.12, '20.3) 지속적인 부패·부조리 근절 필요성, 점검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한 4회 연장
  - \* ('20.3.9)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예방 강화), 활동기한 연장(~'22.6)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8월 ~ 2022년 6월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 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사 업 명
(36)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37-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무총리실	공보실	0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1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702	527	527	610	590	63	12.0

### 4. 사업목적

- 변화하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 맞게 홈페이지·정책블로그·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 강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 \* 국무총리의 국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제7항),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제9항)

- ② 추진경위

- 뉴미디어과 신설('10.7) 및 온라인 대변인 지정('10.10)에 따른 관련 업무 신설
- 정책 소통 확대,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 \* 디지털 콘텐츠 제작·소통 등을 위한 콘텐츠 제작인력(전문임기제 3명) 확충('18.8)
- 대통령·국무총리의 적극적 정책 소통 활동 지시

-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19.1.8, 국무회의, 대통령)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20.1.28, 국무회의, 국무총리)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7. 사업 집행절차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사업 추진 → SNS 만족도 조사 평가 →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

사 업 명
(37)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7037-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실, 민정실		010	012
명칭					일반·지방행정	국정운영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2
명칭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회·정당 및 시민 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1,632	1,873	1,828	1,972	1,972	144	7.9%

### 4. 사업목적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 부처간 당정협의 및 국회 정책설명, 정당원 해외 정책연수 및 연찬회 지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 등 대국회·정당 소통강화 등을 통하여 국정현안업무 추진 지원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국무총리 자문위원회) 운영, 시민사회단체 해외 정책연수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소통·협력 증진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주요 국정현안 현장 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 기반 강화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부칙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특임장관의 소관사무는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승계한다”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 제765호, '20.7.22 폐지),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718호, '20.5.26 제정)

###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고 소관 사무가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업무 수행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